#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 제출일자 : 년 월 일<br>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

1. 개정이유

○ 개관 예정인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관내 기관·단체·기업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로 혜택을 부여

○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미반환 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설 이용객의 편의 도모 및 관리 운영의 효율화

2. 주요 내용

가. 성주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규정(안 제2조제1호, 별표3)

나. 성주별고을풋살장, 선남강변리틀야구장 사용료 규정 추가
(안 제10조, 별표 1)

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13조, 별표 2)

-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단체·기업체 30%감면

라.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미반환 하도록 하는 규제 개선(안 제14조)

- 5일전 사용허가 취소시에만 사용료의 50% 반환에서 차등반환으로 변경

→ 7일전 사용허가 취소시 사용료의 100%, 3일전 사용료의 80%,
1일전 50%, 사용 개시 후에는 남은 일수의 30% 반환으로 개선

마. 기타 용어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 개선사항 없음(기획감사실-11172(2019.11.6.))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지원과-43901(2019.10.25.))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예고기간 '19. 11. 7 ~ 11. 27)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안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성주군에서 설치·관리하는 별표3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제외한다.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3호 중 “관내체육단체”를 “관내체육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행사”를 “체육행사”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배치하여야 하며”를 “배치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인 경우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때에는 전액반환”을 “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에는 전액 반환”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천제지변”을 “천재지변”으로, “때에는 전액 반환”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자가 사용 7일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80/100 반환

2.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50/100 반환

3. 사용자가 사용 개시후 남은 일수를 취소한 경우 : 잔여일수 사용료의 30/100 반환

③ 전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운영”을 “운영과 시설 개선”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중 “위탁자와 사전 협의하여 사용료를 징수”를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시 설 별 | | 기 준 | 체육경기 | | 체육경기 이외 | | 비 고 |
|---|---|---|---|---|---|---|---|
| | | | 평 일 | 토·공휴일 | 평 일 | 토·공휴일 | |
| 성주체육관 | | 주 간 | 40,000 | 60,000 | 100,000 | 140,000 | ※ 오전, 오후로 구분시 주간금액의 1/2적용 |
| | | 야 간 | 30,000 | 45,000 | 70,000 | 100,000 | |
| 성주별고을체육관 (실내체육관) | | 주 간 | 70,000 | 120,000 | 200,000 | 250,000 | |
| | | 야 간 | 100,000 | 150,000 | 250,000 | 300,000 | |
| 성주별고을체육관 (씨름장) | | 주 간 | 10,000 | 20,000 | 50,000 | 70,000 | ※ 타 시·군 전지훈련장으로 이용 시 금100,000원/1일적용 |
| | | 야 간 | 20,000 | 30,000 | 70,000 | 100,000 | |
| 성주 별고을 운동장 | 트 랙 | 오 전 | 20,000 | 30,000 | 40,000 | 60,000 | |
| | | 오 후 | 30,000 | 40,000 | 60,000 | 80,000 | |
| | 필 드 | 오 전 | 45,000 | 70,000 | 90,000 | 140,000 | |
| | | 오 후 | 55,000 | 80,000 | 110,000 | 160,000 | |
| 성주별고을풋살장 | | 주 간 | 10,000 | 20,000 | - | - | 2시간/1면 |
| | | 야 간 | 20,000 | 30,000 | - | - | |
| 성주생활체육공원 (테니스, 정구, 족구) | | 주 간 | 15,000 | 30,000 | 20,000 | 35,000 | 2시간/1면<br>※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 가산 |
| 선남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다목적구장) |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벽진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성주파크골프장 |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게이트볼장 |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선남 강변 야구장 | 성인 | - | 50,000 | 100,000 | 100,000 | 200,000 | 2시간/1회 |
| | 리틀 | | 30,000 | 50,000 | 70,000 | 140,000 | 2시간/1회 |
| ○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단 주간·야간으로 구분할 경우 주간은 08:00~17:00까지로 한다. | | | | | | | |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3조 관련)

<table>
<tr><th>구분</th><th>대 상</th><th>감면 요율</th></tr>
<tr><td>면제</td><td>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td><td>100분의 100</td></tr>
<tr><td rowspan="9">감경</td><td>「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td><td rowspan="6">100분의 80</td></tr>
<tr><td>「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td></tr>
<tr><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td></tr>
<tr><td>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td></tr>
<tr><td>「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td></tr>
<tr><td>「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td></tr>
<tr><td>성주군 다자녀가정</td><td>100분의 50</td></tr>
<tr><td>성주군민</td><td rowspan="2">100분의 30</td></tr>
<tr><td>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td></tr>
<tr><td colspan="3">○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br>(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br>○ 전용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br>○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td></tr>
</table>

【별표 3】 (신설)

성주군 공공체육시설(제2조 관련)

| 명 칭 | 위 치 | 기 능 |
|---|---|---|
| 성주별고을<br>체육공원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참별로 2530-1 일원 | 실내체육관, 씨름장,<br>축구•육상경기장, 풋살장<br>등 |
| 성주국민<br>체육센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15 | 수영장, 체련단련장 |
| 성주<br>체육관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57 | 실내체육관 |
| 성주생활<br>체육공원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상성로 1399 | 테니스장, 족구장,<br>정구장 등 |
| 선남생활<br>체육공원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708-2,<br>1091-16 일원 |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br>다목적구장 등 |
| 벽진생활<br>체육공원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442-78 일원 | 파크골프장 |
| 성주<br>파크골프장 |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51-1 일원 | 파크골프장 |
| 선남강변<br>야구장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7-7 일원 | 성인 및 리틀야구장 |
| 수륜<br>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81-1 일원 | 게이트볼장 |
| 대가<br>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로 755-3 일원 | 게이트볼장 |
| 벽진<br>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1400-75 일원 | 게이트볼장 |
| 초전<br>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769 일원 | 게이트볼장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br>1.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성주군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장, 하키장, 축구장, 궁도장, 야구장,풋살구장, 수영장 등)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br>2. ~ 12. (생 략)<br>제3조(사용허가) ①·② (생 략)<br>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를 갈음한다. | 제2조(정의) ---------.<br>1.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성주군에서 설치·관리하는 별표3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 다 .<br>---------- 제외한다.<br>2. ~ 12. (현행과 같음)<br>제3조(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br><삭 제> |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br>----------. |
| 1.·2. (생 략)<br>3. 성주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등 관내체육단체<br>4. (생 략)<br>5. 직장 및 동료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br>6. ~ 8. (생 략)<br>제5조(시설의 개방) ①·② (생 략)<br>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 1.·2. (현행과 같음)<br>3. ---------- 관내체육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br>4. (현행과 같음)<br>5. ---------- 체육행사<br>6. ~ 8. (현행과 같음)<br>제5조(시설의 개방)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

| | |
|---|---|
|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 배치할 수 있으며 ----------.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 7 조 ( 사 용 제 한 )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인 경우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제12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전용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제12조(초과사용료) ① ----------. |
| 1. 전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 <삭 제> |
| 2. 이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 <삭 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
|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 1. 사용자가 사용 7일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 2 . |

| | |
|---|---|
|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반환 | ---------- 때 |
|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 | 3 . ---------- 경우 |
| 4. 천제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 4. 천재지변---------- 때 |
| ②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을 미사용을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를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br>1. 사용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80/100 반환<br>2.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50/100 반환<br>3. 사용자가 사용 개시후 남은 일수를 취소한 경우 : 잔여일수 사용료의 30/100 반환 |
| <신 설> | ③ 전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 운영과 시설 개선 ----------. |
| 제24조(위탁관리) ①·② (생 략) | 제24조(위탁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위탁자와 사전 협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 11. 14〉 | ③ ----------. ---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 ----------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1. 관람사용료

(단위 : 원)

| 시설별 | | 기준 | 체육경기 | | 체육경기 이외 | | 비고 |
|---|---|---|---|---|---|---|---|
| | | | 평일 | 토·공휴일 | 평일 | 토·공휴일 | |
| 성주체육관 | | 주간 | 40,000 | 60,000 | 100,000 | 140,000 | |
| | | 야간 | 30,000 | 45,000 | 70,000 | 100,000 | |
| 성주별고을체육관 (실내체육관) | | 주간 | 70,000 | 120,000 | 200,000 | 250,000 | |
| | | 야간 | 100,000 | 150,000 | 250,000 | 300,000 | |
| 성주별고을체육관 (씨름장) | | 주간 | 10,000 | 20,000 | 50,000 | 70,000 | ※타 시·군장기 훈련 장으로이용시 금100,000원/1일 적용 |
| | | 야간 | 20,000 | 30,000 | 70,000 | 100,000 | |
| 성주 별고을 운동장 | 트랙 | 오전 | 20,000 | 30,000 | 40,000 | 60,000 | |
| | | 오후 | 30,000 | 40,000 | 60,000 | 80,000 | |
| | 골드 | 오전 | 45,000 | 70,000 | 90,000 | 140,000 | |
| | | 오후 | 55,000 | 80,000 | 110,000 | 160,000 | |
| 성주생활체육공원 (테니스, 정구, 족구) | | 주간 | 15,000 | 30,000 | 20,000 | 35,000 | 2시간/1면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 가산 |
| 선남 강변야구장 | | - | 50,000 | 100,000 | 100,000 | 200,000 | 2시간/1회 |

○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단 주간·야간으로 구분할 경우 주간은 08:00~17:00까지로 한다.

2. 이용료 : 면제

3. 중계방송 사용료

(단위 : 원)

| 구분 | | | 텔레비전 | | 라디오 | |
|---|---|---|---|---|---|---|
| | | | 국내 | 국외 | 국내 | 국외 |
| 중계방송 | 생방송 | 체육경기 | 40,000 | 60,000 | 20,000 | 40,000 |
| | | 체육경기 이외 | 80,000 | 100,000 | 40,000 | 60,000 |
| | 녹화 또는 녹음 | 체육경기 | 20,000 | 30,000 | 10,000 | 20,000 |
| | | 체육경기 이외 | 40,000 | 50,000 | 20,000 | 30,000 |

○ 중계방송사용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

4.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종류 | | 단위 | 요금 | 비고 |
|---|---|---|---|---|
| 성주별고을체육관 | 전광판 | 1회 | 30,000 | 4시간/1회 |
| | 무대 조명시설 | 1회 | 30,000 | |
| 음향설비 | 음향시설 | 1회 | 25,000 | |
| | 마이크(2대/기본) | 1회 | 5,000 | |
| 냉·난방 | | 1회 | 50,000 | |
| 전기시설 | | 1회 | 30,000 | |
| 체육용품 사용료 | 탁구, 배구 배드민턴 등 | 3시간/1인 | 2,000 | ※ 실내체육관 전용대여시 당일사용 불가 |
| | | 월 | 20,000 | |
| ○ 그 밖의 청소료 | | 주최 측에서 부담 정리비용 포함 | | ※고무매트 |

5.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 구분 | | 기준 | 사용료 | 비고 |
|---|---|---|---|---|
| 광고 | 선전물 | ㎡/1일 | 10,000 | |
| | 부양광고물 (애드벌룬 등) | 1개/1일 | 7,000 | |
| 촬영 (영화, 드라마, 상업광고 등) | | 주간 | 40,000 | ※ 초과요금 :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
| | | 야간 | 60,000 | |
| ○ 사용자 주최 측의 홍보 현수막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 | | | |

## 개 정 안

[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1. 관람사용료

(단위 : 원)

| 시설별 | | 기준 | 체육경기 | | 체육경기 이외 | | 비고 |
|---|---|---|---|---|---|---|---|
| | | | 평일 | 토·공휴일 | 평일 | 토·공휴일 | |
| 성주체육관 | | 주간 | 40,000 | 60,000 | 100,000 | 140,000 | |
| | | 야간 | 30,000 | 45,000 | 70,000 | 100,000 | |
| 성주별고을체육관 (실내체육관) | | 주간 | 70,000 | 120,000 | 200,000 | 250,000 | |
| | | 야간 | 100,000 | 150,000 | 250,000 | 300,000 | |
| 성주별고을체육관 (씨름장) | | 주간 | 10,000 | 20,000 | 50,000 | 70,000 | ※ 타 시·군장기 훈련 장으로이용 시 금100,000원/1일 적용 |
| | | 야간 | 20,000 | 30,000 | 70,000 | 100,000 | |
| 성주 별고을 운동장 | 트랙 | 오전 | 20,000 | 30,000 | 40,000 | 60,000 | |
| | | 오후 | 30,000 | 40,000 | 60,000 | 80,000 | |
| | 골드 | 오전 | 45,000 | 70,000 | 90,000 | 140,000 | |
| | | 오후 | 55,000 | 80,000 | 110,000 | 160,000 | |
| 성주별고을풋살장 | | 주간 | 10,000 | 20,000 | - | - | 2시간/1면 |
| | | 야간 | 20,000 | 30,000 | - | - | |
| 성주생활체육공원 (테니스, 정구, 족구) | | 주간 | 15,000 | 30,000 | 20,000 | 35,000 | 2시간/1면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 가산 |
| 선남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다목적구장) |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벽진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성주파크골프장 |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게이트볼장 |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선남 강변야구장 | 성인 | - | 50,000 | 100,000 | 100,000 | 200,000 | 2시간/1회 |
| | 리틀 | | 30,000 | 50,000 | 70,000 | 140,000 | 2시간/1회 |

○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단 주간·야간으로 구분할 경우 주간은 08:00~17:00까지로 한다.

2. 이용료 : 면제

3. 중계방송 사용료

(단위 : 원)

| 구분 | | | 텔레비전 | | 라디오 | |
|---|---|---|---|---|---|---|
| | | | 국내 | 국외 | 국내 | 국외 |
| 중계방송 | 생방송 | 체육경기 | 40,000 | 60,000 | 20,000 | 40,000 |
| | | 체육경기 이외 | 80,000 | 100,000 | 40,000 | 60,000 |
| | 녹화 또는 녹음 | 체육경기 | 20,000 | 30,000 | 10,000 | 20,000 |
| | | 체육경기 이외 | 40,000 | 50,000 | 20,000 | 30,000 |

○ 중계방송사용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

4.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종류 | | 단위 | 요금 | 비고 |
|---|---|---|---|---|
| 성주별고을체육관 | 전광판 | 1회 | 30,000 | 4시간/1회 |
| | 무대 조명시설 | 1회 | 30,000 | |
| 음향설비 | 음향시설 | 1회 | 25,000 | |
| | 마이크(2대/기본) | 1회 | 5,000 | |
| 냉·난방 | | 1회 | 50,000 | |
| 전기시설 | | 1회 | 30,000 | |
| 체육용품 사용료 | 탁구, 배구 배드민턴 등 | 3시간/1인 | 2,000 | ※ 실내체육관 전용대여시 당일사용 불가 |
| | | 월 | 20,000 | |
| ○ 그 밖의 청소료 | | 주최 측에서 부담 포함 | | ※고무매트 정리비용 |

5.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 구분 | | 기준 | 사용료 | 비고 |
|---|---|---|---|---|
| 광고 | 선전물 | ㎡/1일 | 10,000 | |
| | 부양광고물 (애드벌룬 등) | 1개/1일 | 7,000 | |
| 촬영 (영화, 드라마, 상업광고 등) | | 주간 | 40,000 | 8시간/1일 ※ 초과요금 :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
| | | 야간 | 60,000 | |
| ○ 사용자 주최 측의 홍보 현수막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 | |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3조 관련)

| 구분 | 대 상 | 감면 요율 |
|---|---|---|
| 면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100 |
| 감경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80 |
|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
|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
| | 성주군 다자녀가정 | 100분의 50 |
| | 성주군민 | 100분의 30 |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개 정 안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3조 관련)

| 구분 | 대 상 | 감면 요율 |
|---|---|---|
| 면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100 |
| 감경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80 |
|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
|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
| | 성주군 다자녀가정 | 100분의 50 |
| | 성주군민 | 100분의 30 |
| | 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 | |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별표3]신설 |

**<u>성주군 공공체육시설</u>**(제2조 관련)

| 명 칭 | 위 치 | 기 능 |
|---|---|---|
| 성주별고을 체육공원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참별로 2530-1 일원 | 실내체육관, 씨름장, 축구•육상경기장 풋살장 등 |
| 성주국민 체육센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15 | 수영장, 체련단련장 |
| 성주 체육관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57 | 실내체육관 |
| 성주생활 체육공원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상성로 1399 | 테니스장, 족구장, 정구장 등 |
| 선남생활 체육공원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708-2, 관화리 1091-16 일원 |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등 |
| 벽진생활 체육공원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442-78 일원 | 파크골프장 |
| 성주 파크골프장 |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51-1 일원 | 파크골프장 |
| 선남강변 야구장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7-7 일원 | 성인 및 리틀야구장 |
| 수륜 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81-1 일원 | 게이트볼장 |
| 대가 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로 755-3 일원 | 게이트볼장 |
| 벽진 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1400-75 일원 | 게이트볼장 |
| 초전 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769 일원 | 게이트볼장 |